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1
----------	------

제출년월일 : .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 주요골자

- 관계법령 법명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도시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
 - 효율적인 공동구 위탁관리를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 위원구성에 수탁기관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 포함(안 제3조).
 - 공동구관리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활성화 도모(안 제4조).
 - 공동구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공동구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및 점검방법 명시(안 제9조).
 - 점용허가 신청 시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점용기관 간 협의서를 첨부토록 명시(안 제10조).
 - 점용자가 점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공동구를 위탁관리 함으로써 발생되는 간접비용 부담에 따른 점용기관 간 불신해소를 위하여 공동구 관리비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가.

□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제13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8. 4. 23 . ~ 2008. 5. 13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조례 개정계획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 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지하 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관리협의회)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공동구 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구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관리협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위원은 공동구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수탁기관·공동구점용자 등의 소속직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관리협의회 기능) ①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구 예산 및 관리비용
2. 공동구 점용허가 신청의 적격여부
3. 공동구의 활성화 방안
4. 점용시설 등의 공사 또는 보수공사
5. 그 밖에 공동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중 보수공사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점용자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관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용시설)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
2. 그 밖에 관리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하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1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제9조(공동구의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 설치도면을 보관하여야 하고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 ② 수탁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은 점용시설물별 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책임 관리한다.
-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일상점검 : 공동구 내부시설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는 육안 점검
 - 2. 정기점검 : 소방관서, 수용기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는 점검
 - 3. 정밀점검 : 민간전문 점검업체에 의뢰하여 구조물 및 수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점검

제10조(점용·이용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구 점용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협의회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점용자가 점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시설 점용자가 배상한다.

제12조(점용료 및 관리비)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료는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② 공동구 점용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 인건비, 사무비, 기타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 ① 공동구 관리비는 매년 3월 말일과 9월 말일을 납입기한으로 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의 산정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실과		건설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설과장 김학민
	담당 직위,성명	지리정보담당 이준승
	담당자 성명,전화	이준승 (행정 2438)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11
----------	------

제안년월일 : 2008. 7. 7.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원 중 민간전문가 수를 명확히 하고 수당규정을 삽입함.

2. 주 요 골 자

-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원 중 민간전문가 수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5항)
- 수당규정을 삽입함(안 제14조).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원은 공동구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수탁기관·공동구점용자 등의 소속직원을 7인으로, 민간 전문가를 2인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지명 위촉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3조(공동구관리협의회)</p> <p>① ~ ④ (생략)</p> <p>⑤ 위원은 공동구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수탁기관·공동구점용자 등의 소속 직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p> <p>⑥ (생략)</p>	<p>제3조(공동구관리협의회)</p> <p>① ~ ④ (원안과 같음)</p> <p>⑤ 위원은 공동구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수탁기관·공동구점용자 등의 소속 직원을 7인으로, 민간 전문가를 2인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지명 위촉한다.</p> <p>⑥ (원안과 같음)</p>
<p><신설></p>	<p>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 (생략)</p>	<p>제15조 (원안 제14조와 같음)</p>